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

2021. 3.

경 기 도

목 차

| | |
|---|----|
| I.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| 1 |
| II. 2021년 주거지원 계획 | 5 |
| 1. 주거지원 계획 | 5 |
| 2. 주택 공급계획 | 6 |
| 3. 택지 공급계획 | 6 |
| III. 2021년 중점 추진과제 | 7 |
| 1.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| 8 |
| 2.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‘기본주택’ 공급 .. | 11 |
| 3.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| 12 |
| 4.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| 16 |
| 5.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추진 ... | 17 |
| 6. 도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추진 | 18 |
| 7.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| 19 |
| 8.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| 20 |
| 9. 빈집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| 21 |
| 10. 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... | 22 |
| IV. 과제별 추진일정 | 23 |
| < 참고1 >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| |
| < 참고2 > 경기도 「주거복지사업」 조감도 | |

가. 주요 추진성과

①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강화

- (주거안정) 공공임대 20만호 공급계획 등 주거복지사업 차질 없이 추진
 - '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: 5.1만호(건설임대 3.3만호, 매입·전세임대 1.8만호)
 - ※ '18년~'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2.5만호 대비 14.2만호 공급(113.6% 달성)
 - 청년·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공급
 - (착공 1) 고덕서정리역(800호), (준공 5) 의왕역, 오산기장, 성남판교, 광고원천, 동탄호수공원(1,695호)
 - ※ '20년까지 누계 : 사업계획 승인(7,807호), 착공(7,658호), 준공(3,202호)
- (민간임대)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속 추진
 - 공급촉진지구 계획승인(2,000호) ※ (지구계획 승인) 이천백사
 - 「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 기준」 제정·시행('20.12.)
- (주거복지)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및 전달체계 구축
 - 주거급여 지원(23.9만 가구),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(2,101호),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(989호) 및 전세보증금 지원(43호)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(484호) 등
 -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(62개 단지, 5,215호)
 - ※ '17~'20년까지 누계 : 131개 단지 10,636호
 - 햇살·G하우징 사업(681호),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(161호)
 -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경기주거복지포털」 구축 완료('20.9.)
- (사회주택) 경기도형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 추진
 - 「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('20.5.) 및 개정('20.10.)
 - 사회주택 시범사업 모델 개발('20.7.) 및 사업자 선정 공모('20.10.)

< 2020년 경기도 권역별 주거지원(공급) 실적 >

(단위 : 호)

| 사 업 명 | 계 | 경부권역 | 경원권역 | 경의권역 | 동부권역 | 서해안권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| 292,643 | 80,087 | 34,122 | 42,941 | 46,343 | 89,150 |
|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| 33,355 | 6,453 | 2,595 | 5,958 | 3,320 | 15,029 |
| 기존주택 매입·전세임대 | 18,342 | 7,130 | 1,571 | 1,391 | 2,447 | 5,803 |
|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승인 | 2,000 | 0 | 0 | 0 | 2,000 | 0 |
| 주거급여 지원 | 238,946 | 66,504 | 29,956 | 35,592 | 38,576 | 68,318 |

- ◎ 경부권역 : 수원, 성남, 용인, 과천, 안양, 군포, 의왕, 안성
 - ◎ 경원권역 :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포천, 연천
 - ◎ 경의권역 : 고양, 김포, 파주
 - ◎ 동부권역 : 남양주, 주, 이천, 구리, 하남, 양평, 여주, 가평
 - ◎ 서해안권역 : 안산, 부천, 광명, 시흥, 화성, 오산, 평택
- ※ 권역은 「2012-2020 경기도 종합계획」과 「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」 상 설정된 권역 구분임



2]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강화

- (공동주택 환경개선) 주택품질 향상,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,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
 - 공동주택 품질검수(163개 단지), 관리 감사(20개 단지) 및 기술지원 운영(327회)
 -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(297개 단지) 및 안전점검(262개 단지)

3]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

- 정부 협력 기반으로 4년 연속('20년 14곳) 전국 최다 선정
 - '17~'20년까지 전국 400곳 중 12%인 48곳 선정, 국비 4,719억원 확보
 - 도시재생예비사업 최다 선정(전국 220곳, 도 33곳), 뉴딜사업 기반 마련
- 도시재생계획 전문가 컨설팅 지원(36회), 도 주민참여 경진대회 개최
-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도시재생대학 병행 운영 등
 - 도시재생대학 과정 11회 1,177명 수료(기본 106, 전문가 106, 자율주택 51, 온라인 914)

4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적기 추진

-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(16개 지구, 93km², 465천세대)
 - 준공 3개 지구(김포마송, 이천마장, 평택청북)
 - 공사 중 12개 지구, 실시계획 수립 중 1개 지구(양주광석) ※ 道 승인 4곳 포함
-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추가 지정 및 지구계획수립으로 주택공급 지속 확대
 - (신규지정) 고양창릉, 부천대장 등 7개 지구
 - (지구계획수립) 성남금토, 의왕월암 등 5개 지구
 - ※ 道 및 GH 사업시행자 참여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道 주거정책 실현
- 기존 택지·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적기 입주 등 지원
 - 15개 지구 주민 입주 중 ('20년 최초 입주 3개소(파주운정3, 의왕고천, 의정부고산))
 - ※ 「경기도 택지·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입주초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입주지원협의회 2회/연 개최

나. 평가와 반성

-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을 위한 매입·전세임대주택 및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계획목표 이상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,
 - '19년 부진사업인 '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*'과 '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**'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추진
 - * (범위 확대) 재계약자를 제외한 도내 전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, (지원금액 확대) 가구당 표준임대보증금의 50%(최대 200만원 → 250만원)
 - ** (범위 확대) 기존 11개 계층에 노인 1인 가구, 국민임대 입주자, 국가유공자, 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하고, 지원대상자 중 제2금융권 이용자까지 확대
- ⇒ 전년 대비 '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'은 42% 증가, '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'은 826% 증가되는 성과 달성

- 한편, 양적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,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 대응
 - '20년 국토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'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' 추진,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 수요 발굴 및 지원*
 - * (보증금) 無(주거복지재단 지원), (이사비) 가구당 50만원, (생필품) 가구당 30만원 등
 - ⇒ '20년 지원 상담 2,334건, 임대주택 이주 등 지원실적 484호
- 국토연구원 수도권 주택공급 전망('20.11.)에 따르면, '18년 정점으로 '22년 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,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및 사회주택 공급 등 시장 상황에 탄력적·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

II

2021년 주거지원 계획

- ◇ 도민의 '주거권'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경기도 기본 주택·사회주택 공급 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지속 추진
- ◇ 주거급여 지원 등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

1 주거지원 계획

-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.3만호 공급, 주거급여 약 24.12만 가구 지원 등
 - (공공임대주택) 건설 3만호, 매입·전세임대 1.3만호 등 4.3만호 공급
 - 건설 3만호 중 경기행복주택 준공 6개 지구(3,356호)*
 - * 용인죽전, 다산지금A5, 하남덕풍, 경기광주역, 평택BIX, 안산스마트허브
 - 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 지구지정 3개 지구(3,669호)*, 지구계획 승인 1개 지구(1,786호)**(공공임대주택 건설 후 기부채납 231호)
 - * 용인상갈, 파주선유, 의정부호원, **의정부호원
 - (주거급여) 저소득 자가·임차가구(중위소득 45% 이하) 약 24.12만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(전년 대비 약 4% 증가)
 -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에 주택임차료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(월평균 지원액 '20년 15.6만원 → '21년 17.5만원 12% ↑)
 - * 임차가구(24만) 매월 임차료 지급, 자가가구(0.12만) 수선유지비 지원

<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 및 계획 >

| 구 분 | 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(계획)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| 계 | 104.72 | 22.3 | 25 | 29.0 | 28.42 |
| 공공임대주택 준공(만호) | 18.5 | 4.5 | 4.6 | 5.1 | 4.3 |
| 주거급여 수급(만가구) | 86.22 | 17.8 | 20.4 | 23.9 | 24.12 |

-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주택 공급(근로복지기본법)
 - 근로자주택 3.6천호(용인 0.5, 화성 0.5, 광주 0.3, 안성 0.3, 가평 2.0) 사업 추진(민간)

2 주택 공급계획

- '21년 경기도 내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 공급(준공) 물량은 '20년(15.7만호) 보다 △4.5% 감소한 15.0만호로 전망
 - '20년 대비 아파트 6.9% 감소(13.0→12.1만호), 기타 7.4% 증가(2.7→2.9만호)

< 도내 주택공급 물량(준공기준) >

| 구 분 | '20년 실적 | | | '21년 전망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
| | 계 | 상반기 | 하반기 | 계 | 상반기 | 하반기 |
| 계(만호) | 15.7(4.6)* | 7.6 | 8.1 | 15.0(3.9)** | 6.2 | 8.8 |
| 아파트 | 13.0(4.6) | 6.3 | 6.7 | 12.1(3.9) | 4.6 | 7.5 |
| 기 타 | 2.7 | 1.3 | 1.4 | 2.9 | 1.6 | 1.3 |

* '20년 () 내는 공공건설임대(3.3만호) 및 공공분양(1.3만호) 준공물량

** '21년 () 내는 공공건설임대(3.0만호) 및 공공분양(0.9만호) 준공(예정)물량

※ LH 및 지방공사 입주계획, 착공실적 등을 토대로 입주예정 물량 추계

-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상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약 11만호로 정합성 등을 위해서는 적정 공급량 유지 필요
 - 아파트 분양물량은 '16년 17.4만호, '17년 10.3만호, '18년 11.1만호, '19년 9.9만호, '20년 11.4만호로 소폭 증가(전년 비 15.2% 증가)

3 택지 공급계획

- 공공택지지구 41.4km²(실시·지구계획 승인) 공급 추진
 - 공공주택사업 39.5km², 도시개발사업 1.5km², 민간임대주택사업 0.4km²
- 신규 공공택지지구 7곳 5.8km² 지정 예정

| 계 | | 공공주택사업 | | 도시개발사업 | | 민간임대주택사업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7개소 | 5.8km ² | 1개소 | 0.6km ² | 5개소 | 4.8km ² | 1개소 | 0.4km ² |

※ 경기도 2021년 택지수급계획 및 택지지정계획

III

2021년 중점 추진과제

- ◆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**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**(’22년까지 20만호)
 - ’21년도 공공임대주택 4.3만호 공급(건설 3.0, 매입·전세 1.3)
- ◆ 수요자 기반 포용적 **주거지원 강화** 및 주거복지 **전달체계 구축·운영**
 -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
 - 주거급여 지원(24.12만가구)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(430호)
 - 햇살하우징(500호), G-하우징(130호), 장애인 주택개조사업(201호)
 -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(1,200호),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(1,300호),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(57호),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(7,366호)
 - 경기주거복지포털 안정적 운영 및 道 주거복지센터 활성화
- ◆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**경기도 기본주택 공급**
 -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(임대형)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(‘장기전월세주택’ 유형 신설)
 - (분양형) 「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
 - 경기도 기본주택 道↔시·군 업무협약 추진
 - (포괄적 업무협약) 道↔시·군 모두가 참여하는 협약 추진
 - (개별 업무협약) 道↔사업후보지 확보 시·군 간 1:1 협약 추진
- ◆ 청년·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**경기행복주택** 공급
 - 사업계획 승인 2,156호, 착공 2,055호, 준공 3,356호
- ◆ **사회주택**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 -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(5개년), 시범사업, 금융지원 협약 등 추진

< 경기도 권역별 주거지원(공급) 계획 >

◎ 경기도 계획권역

(단위 : 호)

| 계획권역 | 해당 시·군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부권역 | 수원, 성남, 용인, 과천, 안양, 군포, 의왕, 안성 |
| 경원권역 |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포천, 연천 |
| 경의권역 | 고양, 김포, 파주 |
| 동부권역 | 남양주, 광주, 이천, 구리, 하남, 양평, 여주, 가평 |
| 서해안권역 | 안산, 부천, 광명, 시흥, 화성, 오산, 평택 |



※ 계획권역은 「2012-2020 경기도 종합계획」과 「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」 상 설정된 권역구분임

◎ 권역별 주거지원(공급) 계획

(단위 : 호)

| 사 업 명 | | 계 | 경부권역 | 경원권역 | 경의권역 | 동부권역 | 서해안권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 | | 284,080 | 70,831 | 32,669 | 47,530 | 53,202 | 79,848 |
| 건설형 | 공공임대주택 | 30,610 | 375 | 434 | 11,051 | 8,790 | 9,960 |
| | 공공분양주택 | 8,601 | 1,789 | 160 | 0 | 5,540 | 1,112 |
|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| | 3,669 | 1,327 | 1,786 | 556 | 0 | 0 |
| 주거급여 지원* | | 241,200 | 67,340 | 30,289 | 35,923 | 38,872 | 68,776 |

* '20년 지원 실적 기준으로 권역별 추계

1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

1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

- '21년 도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총 4.3만호 공급

<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/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>

| 구 분 | 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(만호) | 20.0(4.1) | 3.3(0.31) | 4.1(0.63) | 5.1(0.54) | 4.3(1.12) | 3.2(1.50) |
| 건설임대 | 13.7(2.24) | 2.1(0.02) | 2.9(0.29) | 3.8(0.18) | 3.0(0.71) | 1.9(1.04) |
| 매입·전세 | 6.3(1.86) | 1.2(0.29) | 1.2(0.34) | 1.3(0.36) | 1.3(0.41) | 1.3(0.46) |

※ ()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물량

2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

- 공급대상 :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주거급여 수급자 등
- 공급계획 : 사업계획 승인 4개 지구(2,156호), 착공 5개 지구(2,055호), 준공 6개 지구(3,356호)

※ '20년까지 누계('15~20) : 사업계획 승인(7,807호), 착공(7,658호), 준공(3,202호)

- 임대료 : 주변시세 대비 60~80%
- 거주기간 : 6년 ~ 20년

③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기본방향 :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, 시범사업, 금융지원 협약 등 추진
- 추진계획
 - (기본계획) 사업모델 개발, 공급계획 등 중·장기 방향 설정(용역 : '21.3.~11.)
 - (근거) 「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※ 5년마다 수립
 - (시범사업) 사업자 공모·선정('21.1.~6.) 및 행정절차 이행(~'22.2.)
 - (대상) 일반60%(무주택자), 특별40%(특별 20%이상+취약계층정책대상) ※ 주변시세 80% 임대료
 - (금융협약) 道, GH공사, HUG, 금융기관과 금융 지원체계 마련(~'21.5.)
 - (교육·홍보) 사회주택위원회 구성·운영(6개 분야 20명) 및 활성화 교육·홍보

④ 기존주택 「매입·전세 임대주택」 공급

- 공급대상 :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
- 사업량 : 24,726*호('21년 1.3만호 공급계획 대비 사업량 90.2% 확대)
 - * 매입임대 : 14,028호(도 516, LH 13,512) / 전세임대 : 10,698호(도 3,600, LH 7,298)
- 지원기준
 - (매입임대) 호당 사업비 1.78억원(국비·기금 등 1.28, 도 0.2, GH공사 0.3)
 - (전세임대) 호당 사업비 1.1억원(기금 95%, 입주자 5%)
- 임대료 : 시중 전세가격의 30% 수준(최장 20년)

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
- 공급대상 :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(19~39세)
- 사업량 : 195호(매입임대 물량에 포함)
- 지원기준 : 호당 사업비 1.8억원(국비·기금 등 1.3, 도 0.2, GH공사 0.3)
- 임대료 : 시중 전세가격의 30~50%(최장 6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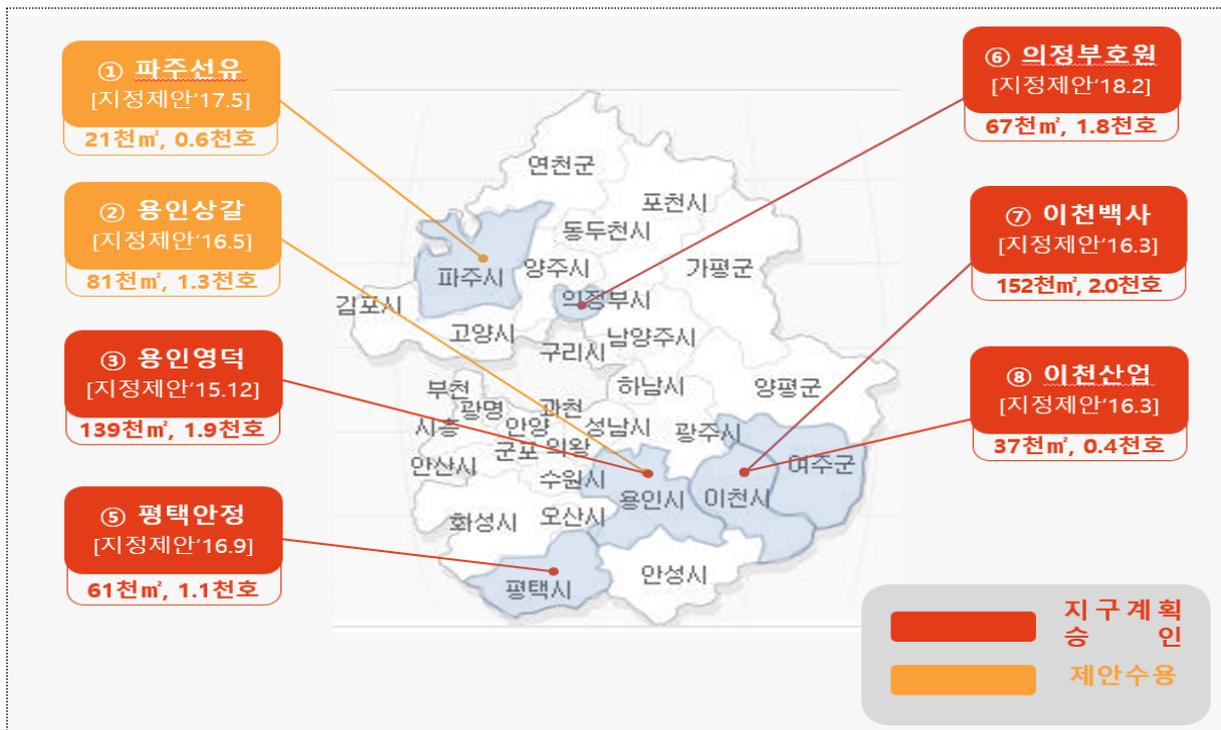
6 아동 주거빈곤가구, 시설퇴소 아동 등 임대주택 공급

- (아동 주거빈곤가구, 퇴소 아동·청소년) 입주 희망시 매입임대주택, 전세 임대주택 등 1순위 또는 우선 공급 지속 확대 추진
 - ※ ('20년) 공공임대주택(689호), 주택개보수 지원(26호), 주거비 지원(8호, 500만원/호,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계)
 - 「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」에 따라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* 추진,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 수립 계획
 - *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('20.6.~)
- (한부모가족, 고령자) 입주 희망시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매입·전세임대 등에 1순위 또는 우선 공급
 - ※ 입주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,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,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

7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」 공급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속 추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)
 - 촉진지구 지정 : 파주선유·용인상갈·의정부호원 지구(3.7천호)
 - 지구계획 승인 : 의정부호원 지구(1.8천호)

<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」 추진현황 >



□ 사업개요

- (개념)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다양한 '기본주택' 공급
 - 임대형(장기임대) :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
 - 분양형(공공판매) : 토지 공공소유 및 주택만 분양 후 거주(적정 토지임대료)
- (입주자격) 무주택자 누구나(소득·자산·나이기준 없음)
- (입지 및 공급) 3기 신도시지역 등 역세권 핵심지역(GH참여 건설호수 50%)
- (월임대료 및 면적) 전용 74㎡ 기준(임대형 57만원, 분양형 30만원)
 - ※ (임대형) 26㎡(283천원)/44㎡(397천원)/59㎡(485천원)/74㎡(573천원)/85㎡(634천원) (용자조건 등에 따라 증감)
 - (분양형) 74㎡(2.77억원/ 295천원) 85㎡(3.05억원/ 337천원) (입지에 따라 증감)
- (기관별 역할) [GH공사] 건설, 공급, 관리 [비축리츠] 임대주택 보유
- (재원) 주택기금융자 80%, 출자 10%, 임대보증금 10%

□ 추진실적

- (임대형) '경기도 기본주택(임대형)' 정책 발표('20.7.21. GH사장 / 7.28. 경기도지사)
 - '경기도 기본주택(임대형)' 정책 건의(道→국토교통부, '20.8.21.)
 - 전문가 간담회('20.9.3, 도지사 주재), 국회 토론회('20.9.15, 국토교통위 주재)
 - 지방참여형 신도시 조성 추진 관련 기본주택 추가 건의('20.11.26.)
 -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(기본주택) 개발 업무협약 체결('20.12.23.)
- (분양형) '경기도 기본주택(분양형)' 정책 추진 발표('20.7.28. 경기도지사)
 - '경기도 기본주택(분양형)' 기자회견('20.12.17. 도시정책관)
 - '경기도 기본주택(분양형)' 정책 건의(道→국토교통부, '21.1.8.)
-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 개최('21.1.26.) ※ 국회의원(50명) 공동주최/ 도·GH 공동주관
-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* 및 홍보관 개관(2.25)
 - 토론 및 의견수렴, 홍보관 운영을 통해 사업모델 확립 및 국민 공감대 형성
 - * 주요내용 : 기본주택(장기임대형, 분양형) 관련 전문가 발제 및 토론

□ 향후계획

- 경기도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 구상 및 관련기관 협의
 - GH공사 보유택지 우선 검토, 시·군 사업제안 대상지 업무협약 등

3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

1 「주거급여」 안정적 지원
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45% 이하 가구
- 사업량 : 약 24.12만 가구(임차 24만, 자가 0.12만)
- 사업비 : 4,811억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·군비 10%)
- 지원내용 : (임차지원) 평균 17.5만원, (자가지원) 최대 1,241만원 개량 지원

2 「햇살하우징(에너지효율화)」 사업
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4인 가구 244만원)
- 사업량 : 500호
- 사업비 : 25억원(도비 100%)
 - * 호당 5백만원 이내 지원
- 지원내용
 - 에너지효율화 항목(창호, 문, LED조명 등)
 - * 경기주택도시공사 협조
 - 기타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등



< 햇살하우징 추진과정 및 효과 >

3 「G-Housing」 사업
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70%이하 가구(4인 가구 341만원)
- 사업량 : 130호
- 사업비 : 비예산*(재능기부)
 - * 민간, 단체 현물 및 재정 100% 기부
- 지원내용 : 주거환경 개선*
 - * 부엌(싱크대), 화장실, 도배, 장판 등



< G-하우징 추진과정 >

4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

- 지원대상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농어촌 장애인
- 사업량 : 36호(호당 380만원 지원)
- 사업비 : 1.37억원(국비 50%, 시군비 50%)
- 지원내용 : 출입문 단차 제거, 욕실,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지원

5 중증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
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70% 이하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사업량 : 165호(호당 500만원 지원)
- 사업비 : 8.25억원(주거복지기금 100%)
- 지원내용 : 출입문 단차 제거, 욕실, 개방형 싱크대 설치, 도배, 장판 등 지원

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비주택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
- 사업량 : 430호
- 사업비 : 4.9억원(국비 2.45억원, 도비 2.06억원, 시·군 0.39억원)
 - 사업유형 : 광역관리형(통합관리 필요지역), 기초관리형(세부지역 밀착 관리 필요지역)
 - * 시·군 신청에 의해 구분, 광역형(국비50%, 광역50%), 기초형(국비50%, 광역20%, 기초30%)
- 지원내용 :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보증금, 이사비용, 생필품 등 지원

7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(LH·GH)
- 사업량 : 1,200호 * 추진방법 : 道-공사(LH, GH)
- 사업비 : 30억원(주거복지기금 100%)
- 지원내용 : 표준임대보증금의 50%이내(호당 250만원), 최장 20년 무이자 지원

< 추진절차 >



8]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5%이하 무주택세대주
- 사업량 : 57호(호당 최대 1억원 지원, 전세보증금의 85% 이내)
- 사업비 : 57억원(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)
- 지원내용 :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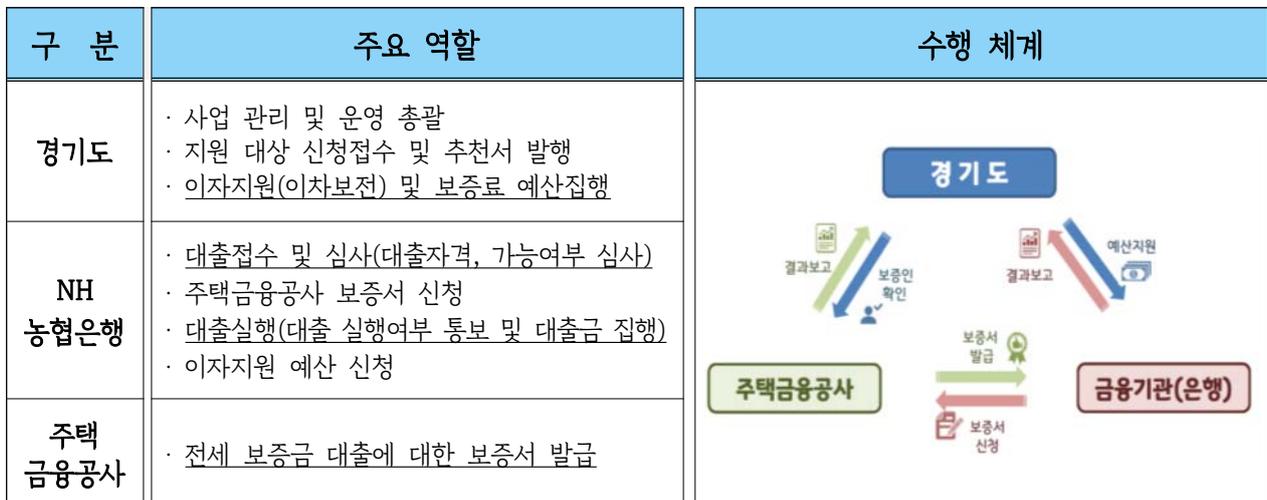
< 추진절차 >



9]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도내 저소득층(수급자, 차상위, 국민임대주택 입주자, 중증장애인 등)
- 사업량 : 1,300호
- 사업비 : 6.2억원(주거복지기금 100%)
- 지원내용 : 대출 보증료 전액, 대출금리 2% 지원(최대 4년)
※ 가구당 최대 45백만원까지 대출 가능
- 추진방법 : ‘道-한국주택금융공사-NH농협’ 간 협약을 통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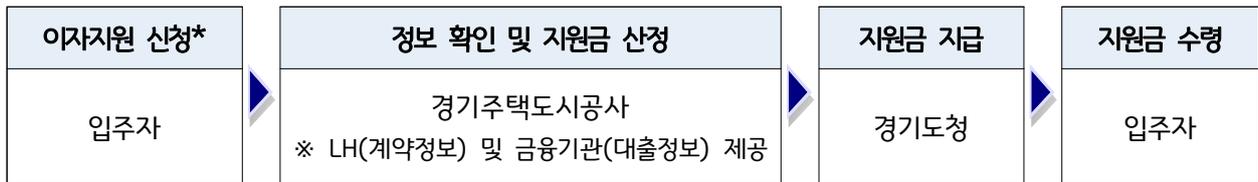
< 주요역할 및 수행체계 >



10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
- 지원대상 : 도내 행복주택 6만호(GH 1만, LH 5만)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- 사업량 : 7,366호
- 사업비 : 19억원(도비 100%)
- 지원내용
 - (지원방식) 입주 및 유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
 - 입주 시 기본 40% / 유자녀(1자녀) 60% / 유자녀(2자녀 이상) 100% 지원
 - (지원금리)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('21.1월 현재 : 1.8~2.4%)
 - 버팀목 외 대출자 :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<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절차 >



* 접수기관 : [경기주택도시공사]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/ [LH, 지자체 등] 행복주택 입주자

11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

- 주요역할 : 통합적 주거복지 D/B구축 및 정보 제공, 상담 및 교육 등
- 소요예산 : 10억원(주거복지기금 100%)
- 시행방법 :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('19.4.4. ~ '21.12.31.)
- 운영계획
 - (네트워크 강화) 협약체결기관(시흥·수원센터 등)과의 정담회(1회/분기) 개최 및 주거복지센터 워크숍(주거복지센터 네트워킹 데이) 운영
 - (교육)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(3회) 및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실시
 - (상담)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창구 확대 및 시·군 주거복지상담 지원
 - (포털관리)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유지·보수 및 업데이트
 - ※ '코로나-19'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 방역조치 철저 및 비대면 사업 추진 실시

1] 공동주택 관리 감사

- 대 상 :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*
 -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
 -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*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 승강기나 중앙(지역)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
- 시기/방법 : 연 중 / 민·관 합동 현장방문 감사
 - 민간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·운영(14개 분야 70명)

| 구분 | 계 | 법무 | 회계 | 세무 | 노무 | 주택 관리 | 건축 기술 | 토목 기술 | 안전 관리 | 통신 기술 | 전기 | 기계 | 소방 | 적산 | 조경 |
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합계 | 70명 | 9 | 10 | 2 | 4 | 12 | 10 | 2 | 2 | 2 | 4 | 4 | 2 | 1 | 2 |

- 사 업 량 : 25개 단지('20년도 20개 단지, 증 5) ※ 시·군 요청시 추가 감사

2] 공동주택 관리 사전 자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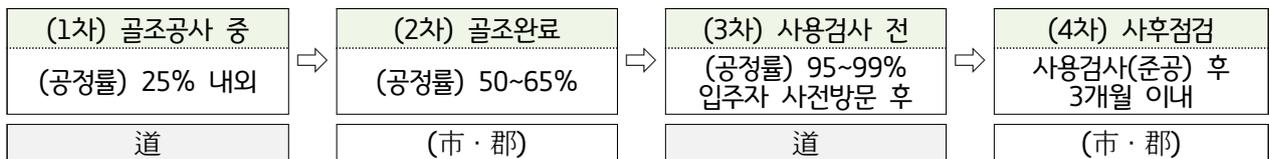
- 목 적 :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전자문을 통해 비리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
- 대 상 :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,662개 단지
- 자문내용 : 관리행정, 회계관리, 계약사무 등에 대한 자문 실시
 - * (자문제외) 고소·고발 등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,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,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
- 신청요건 :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인 이상(500세대미만 10인, 500세대이상 20인)
- 시기/방법 : 연 중 / 민·관 합동 현장방문 자문
 - 단지별 민간전문가*와 관련 공무원 직접 현장방문하여 자문 실시
 - * (민간전문가) 道 감사단 70명(법무·회계 19, 주택관리 12, 세무·노무 6, 안전관리 등 33)

5

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추진

□ 사업개요

- 근거 : 「주택법」 제48조의3, 「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목적 :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발생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
- 대상 :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, 도시형생활주택(50세대 이상), 주상복합건축물(300세대 이상), 리모델링(30세대 증가), 주거용오피스텔(500실 이상)
- 시기 : ‘골조공사 중’(1차), ‘사용검사 전’(3차)



- 방법 : 건축·구조·소방 등 9개 분야 품질검수단(민간전문가) 현장점검
* 道 품질검수단 제8기 위촉(100명~120명, 구조·토목·소방 등 안전 분야 확대 '20.10월)

□ 추진현황

- '06. 8. :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 구성(1기 9명) 및 운영계획 방침
- '10. 4. :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(전국 최초)
- '19. 4. : 주거용 오피스텔 품질검수(500실 이상) 도입
- '20. 12. : 건설관계자 온라인 워크숍 개최(515명 참여)

| 구 분 | 합 계 | 연도별 품질검수 현황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'07 ~ '10 | '11 ~ '14 | '15 | '16 | '17 | '18 | '19 | '20 |
| (총 계) | 1,973 | 396 | 403 | 130 | 194 | 204 | 258 | 225 | 163 |
| 골조공사 중(1차) | 159 | '19. 1월부터 | | | | | | 85 | 74 |
| 골조완료(2차) / 사용검사 전(3차) | 1,635 | 396 | 403 | 119 | 161 | 143 | 184 | 140 | 89 |
| 사후점검(4차) | 179 | '15. 10월부터 | | 11 | 33 | 61 | 74 | - | - |

* 골조완료 후(2차)는 '17년부터, 사후점검(4차)은 '19년부터 시·군 실시

*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제도화 「주택법」 개정('20.1.23.) 시행('21.1.24.)

□ '21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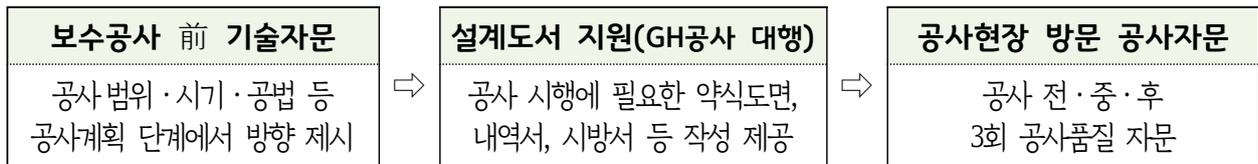
- 공동주택 등 153개(골조공사중 56, 사용검사전 97) 단지 품질검수(연중)
- 道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개정('21.2월~)
- 건설관계자(시공·감리자·시군 공무원 등) 온라인 워크숍 개최 ('21.3월, 하반기/총2회)
- 공동주택 우수 시공·감리자 선정을 위한 평가('21.4~5월)
- 우기(폭염) 대비 안전점검('21.6월) 및 품질검수 사례집 제작·발간('21.7월) 등

6

도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기술지원 추진

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
- 신청/시기 :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/상시
- 사업내용 :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전과정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



- 자문단 구성 : 9개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

| 인원 | 건축시공 | 건축구조 | 토목시공 | 조경관리 | 전기통신 | 소방 | 기계설비 | 승강기 | 교통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|----|
| 100 | 40 | 4 | 9 | 6 | 12 | 4 | 12 | 7 | 6 |

□ 추진현황

- 연도별 기술지원 현황

(단위 : 단지, 백만원)

| 구 분 | 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계 | 1,370 | 8 | 163 | 159 | 150 | 220 | 343 | 327 |
| 기술자문 | 1,194 | 8 | 143 | 153 | 147 | 194 | 292 | 257 |
| 설계도서 지원 | 146 | - | 20 | 6 | 3 | 26 | 41 | 50 |
| 공사자문 | 30 | - | - | - | - | - | 10 | 20 |
| 사업비(백만원) | 445 | - | 52 | 38 | 36 | 27 | 36 | 256 |

※ '20년에 기술자문한 보수공사 공종은 도장(27%), 방수(17%), 도로 포장(8%), 교통(7%) 순임

□ '21년 추진계획

- 기술지원 목표 350회(기술자문 250회, 설계도서 지원 70회, 공사자문 30회)
- 공동주택 우수정책(감사, 품질검수, 기술지원)의 적극 홍보를 통한 도민 인지도 확산
 - 온라인(홈페이지, SNS 등) 및 오프라인(승강기 및 G-버스 등), 언론 등을 활용 홍보
- '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리잡이' 발간·배포(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,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)
 -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, 보수공사 관리 등에 참고자료 활용

①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

- 대 상 : 사용검사(승인) 후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*(아파트, 다세대·연립주택)
*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,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
- 사업내용 : 단지 내 옥상(방수), 담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
- 기 간 : '19년 ~ '22년(4개년)
- 총예산액 : 17,920백만원(도 5,376, 시·군 12,544) ※ 비율 : 도 30%, 시·군70%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단지, 백만원)

| 구 분 | | 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소요 예산 | 계 | 17,920 | 2,632 | 4,648 | 5,328 | 5,312 |
| | 도 비 | 5,376 | 789.6 | 1,394.4 | 1,598.4 | 1,593.6 |
| | 시군비 | 12,544 | 1,842.4 | 3,253.6 | 3,729.6 | 3,718.4 |
| 사업량 | | 622(290) | 109(72) | 160(73) | 177(73) | 176(72) |

※ 괄호() 안은 건축허가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주택 등) 사업량

- '21년 사업량 : 177개소(사업계획 승인 104단지, 건축허가 73동)
- 추진일정
 - '21. 1.~ 2. : '21년 사업계획 안내 및 도비 보조금 교부(도→시·군)
 - '21. 3.~ 4. : '21년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 선정
 - '21. 3.~12. : 선정단지 보조금 교부(시·군 → 단지) 및 사업추진

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

- 대 상 :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* 단지
*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
- 사업량 : 수원시 등 22개 시·군 315개 단지
- 지원내용
 - 사업비 : 1,265,450천원(도 338,803 / 시·군 926,647)
 - 사업내용 : 단지별 안전점검 비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
- 추진일정
 - '21. 1.~ 2. : '21년 사업계획 통보 및 도비 보조금 교부(도→시·군)
 - '21. 3.~ 4. : '21년 안전점검 대상단지 선정 및 위탁업체 계약
 - '21. 3.~12. : 단지별 안전점검 실시

□ 사업개요

- 추진배경 : 대규모 철거 방식에서 지역·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
 - (쇠퇴지역*) 도시재생법상 道 내 565개 읍면동 중 231개(41%) 해당
 - * 쇠퇴지역(인구·산업체 감소, 노후건축물 증가) / 전국 3,512개 읍면동 중 2,403개(69%)
- 사업목표 : 50곳 이상 선정('17~'21년, 정부 500곳 이내 선정)
- 사업기간 : '17 ~ '21년(사업선정 : '17~'21년 / 사업시행 : '18~'26년)
- 총사업비 : 1조 2,150억원 추정(국비 4,830, 지방비 3,220, 부처연계 4,100)

□ 추진현황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: 전국 400곳 중 48곳 선정('17~'20년, 전국 최다)
 - (선정유형) 우리동네살리기 7곳, 주거지지원 9곳, 일반근린 15곳, 중심시가지 5곳, 인정사업 6곳, 총괄사업관리자 4곳, 혁신지구 2곳
 - (사업내용) CCTV 등 소규모 편의시설, 소공원 등 문화서비스 공간,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, 공공임대주택* 공급 등
 - * 지자체-공기업 연계 : 공공임대주택 2,716호 공급(계획수립 중 2,050호, 착공 614호, 준공 52호) 추진
- 도시재생예비사업 : 전국 220곳 중 33곳 선정('17~'20년, 전국 최다)
- 재원확보 : 도시재생특별회계 464억원('17~'20년) ※ '21년 191억원 반영
- 道-센터 전문가(35명) 컨설팅 지원 : 122회('17~'20년)
-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체감도 향상
 - ※ 뉴딜사업 지방위원회 중복심의 배제,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면제 등 道 건의사항 반영

□ '21년 추진계획

- 국정과제 및 민선7기 공약 도시재생뉴딜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조성
 - '21년까지 도시재생뉴딜 목표량(50곳 이상)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
 - '21년 특별공모 뉴딜사업(위험건축물 재생) 적극 발굴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
- 기 선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
 - 착·준공, 실집행률 등 월별 모니터링 및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(수시)
- 뉴딜사업 주민체감 확산 및 속도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
 - ※ 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(시군·한전 50%), 도시재생사업 재원 사용범위 확대 등

9

빈집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

□ 사업개요

- 빈집 정비 지원사업 : `21년부터 계속(도 30%, 시군 70% 분담)
 - 사업량 : 도내 빈집 총 602호 정비(`21년 83호, `22년 269호, `23년 250호)
 - 사업비 : `21년도 1,325백만원 (도비 398백만원, 시군비 927백만원)
 - 사업내용 : 철거지원, 보수지원, 안전조치 지원
- 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: 총 2개소
 - 사업량 : 남부 1개소(임대주택), 북부 1개소(지역활성화시설)
 - 사업비 : 65억원(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금)
 - 사업내용 :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및 지역활성화시설 공급

◀ 빈집 현황(2020년 12월 기준) ▶

- ▶ 경기도 약 5,132호(전국4.7%수준) ※ 전국 약 10만 9천호(국토부 자료)
- 실태조사 완료 : 26개 시 확정 빈집 3,360호 / 실태조사 진행 : 5개 시군 추정 빈집 1,772호

□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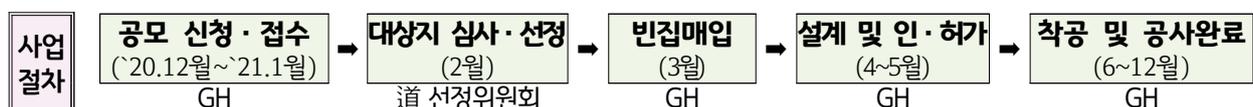
- `20년 빈집 실태조사 추진(26개 시군 완료, 5개 시군 추진중)
- `20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(8개 시 완료, 13개 시 추진중, 7개 시 계획수립중)
 - ※ 3개 군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적용 제외
-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(`20.7.24.)
- 빈집 활용 시범사업 공모(`20.12.23.~`21.1.22.)

□ 2021년 추진계획

○ 빈집 정비 지원사업

- 8개시 83호 : 수원34, 용인10, 이천5, 고양17, 시흥4, 양주5, 안양1, 의정부7
- 철거지원 : 단순철거 1천만원 /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(주차장, 텃밭 활용 등) 2천만원
- 보수지원 : 단순보수 1천만원 / 보수 후 5년간 공공활용(임대주택 제공 등) 3천만원
- 안전조치 지원 : 울타리 설치 6백만원

○ 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: 경기주택도시공사 추진



10 재개발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

- 2·4대책에 따른 공공직접시행 추진 : 사업기간 단축(13년 → 5년)
 - 공공(GH, LH)이 토지·건물 수용(조합설립 및 총회, 관리처분 불필요)하여 신속추진, 사업비 절감(도시정비법 개정 필요)
 - (기존)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므로, 주민 총회나 관리처분 중 갈등·소송 빈발 ⇒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
 - (공공직접시행)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추진(공기업이 수용 후 분양)
 - * 정비계획 변경신청 후 1년 이내 【면적 1/2】 + 【조합원 2/3】 이상 동의 필요
 - 토지등소유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과 시공사 선정권한이 있음
 -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개선 :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%
 - 추가혜택 :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,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, 기존 주택을 현물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, 특별건축구역 의제
 - 공공임대 : (전체세대수 기준) 재개발 10~15%(현 5%), 재건축 5~10%(현 0%)
 - 공공자가주택(지분형, 환매조건부, 토지임대)* 추가 공급(10 ~ 20%)
 - * 환매조건부 : 주택을 팔 때 분양가에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공공에 파는 방식
 - 투기방지 : 대책발표('21.2.4.) 후 매수자는 아파트공급권 미부여(현금청산)
- 향후 계획
 - 공공직접시행제도 신설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(2021.3 예정)
 - 국토부, GH, LH와 경기도 내 공공직접시행 추진방향 논의 등 적극적 대응

IV

과제별 추진일정

| 추진과제 | 조치사항 | 추진일정 |
|--|---|-------|
| 1.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| | |
| ① 공공임대주택 공급(4.3만호) | 준공 · 입주 | 1~12월 |
| ② 경기행복주택 공급 | (사업계획 승인) 4개 지구(2,156호) (착공) 5개 지구(2,055호) (준공) 6개 지구(3,356호) | 1~12월 |
| ③ 사회주택 기반 마련 | 기본계획 수립(용역), 시범사업, 금융 지원 협약 추진 등 | 1~12월 |
| ④ 매입·전세 임대주택 공급(1.3만호) | (매입) 조사 → 감정평가 → 매입 → 입주 (전세) 접수 → 계약체결 → 입주 | 1~12월 |
| ⑤ 청년매입임대(195호) | (매입) 조사 → 감정평가 → 매입 → 입주 | 1~12월 |
| 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| (공급촉진지구 지정) 3개소(3.7천호) (지구계획 승인) 1개소(1.8천호) | 1~12월 |
| 2.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‘기본주택’ 공급 | | |
| ① 제도개선 추진 | (임대형)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 (‘장기전월세주택’ 유형 신설) (분양형) 「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 | 1~6월 |
| ② 道·시·군 업무협약 체결 추진 | 道↔31개 시·군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(4월) 道↔시·군 1:1 개별 업무협약 체결(1~12월) | 1~12월 |
| 3.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| | |
| ① 주거급여 지원(24.12만 가구) | 신청(읍면동) → 소득·재산 조사 및 보장결정(시·군) → 급여지급(시·군/매월) | 1~12월 |
| ② 햇살(에너지효율화) 하우스(500호) | 수요조사 | 1~3월 |
| | 에너지 효율 진단 및 공사 | 4~12월 |
| ③ G-하우스 사업(130호) | 참여업체 및 대상파악 | 2~3월 |
| | 공사 시행 | 4~12월 |

| 추진과제 | 조치사항 | 추진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
| ④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(36호) | 신청(읍면동) → 확인 및 추천 → 현지조사 → 공사시행 | 1~12월 |
| ⑤ 중증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(165호) | 신청(읍면동) → 확인 및 추천 → 현지조사 → 공사시행 | 1~12월 |
| 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(430호) | 사업 홍보전략 다각화 및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독려 | 1~12월 |
| ⑦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(1,200호) | 입주신청 → 예비입주자 선정 → 지원·계약 → 잔금납부 및 입주 | 1~12월 |
| ⑧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사업(57호) | 대상자 모집 → 대상자 선정 → 주택물색 및 권리분석 → 계약 및 입주 | 3~12월 |
| ⑨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(1,300호) | 맞춤형 홍보 실시 | 1~12월 |
| ⑩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(7,366호) | 이자지원 신청(입주자) → 정보확인 및 지원금 산정(GH) → 지원금 지급(경기도청) → 지원금 수령(입주자) | 1~12월 |
| ⑪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|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, 포털 운영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행 | 1~12월 |
| 4.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| | |
| ① 공동주택 관리 감사 (25개 단지) | 상반기 감사실시 | 2~6월 |
| | 하반기 감사실시 | 8~11월 |
| ② 공동주택 관리 사전 자문 (신청시 수시) | 신청서 제출(단지 ⇒ 道) → 현장 자문 추진 | 2~11월 |
| 5.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추진 | | |
| ① 공동주택 품질검수(153개 단지) | 신청(시·군) → 계획수립 → 품질검수 → 결과통보 → 조치 | 1~12월 |
| 6. 도민이 만족하는 공동주택 기술지원 추진 | | |
| ① 공동주택 기술지원(350회) | 신청(단지별) → 계획수립 → 기술지원(기술자문, 설계도서 지원, 공사자문) → 결과통보 | 1~12월 |

| 추진과제 | | 조치사항 | 추진일정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7.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| | | |
| ①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(177단지) | 유지관리지원 도비 보조금 교부(도→시·군) | | 2월 |
| | 지원 대상단지 선정(시·군) | | 3~4월 |
| | 선정단지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| | 3~12월 |
| 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(315단지) | 안전점검 도비 보조금 교부(도→시·군) | | 2월 |
| | 용역계약 및 점검추진(시·군) | | 3~4월 |
| | 단지별 안전점검 실시 | | 3~12월 |
| 8.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| | | |
|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| '21년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공고 후 도 선정계획 수립, 평가선정 추진 | | 1~12월 |
| 9. 빈집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 | | | |
| ① 빈집 정비사업 추진 | 빈집활용 시범사업 | 사업 공모 및 대상지 선정 | 1~2월 |
| | | 빈집 매수 협의 | 3월 |
| | | 건축 설계 및 공사 | 4월~12월 |
| | 빈집정비 지원사업 | 빈집 정비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| 1~2월 |
| | | 수요 조사 및 대상지 선정 | 3~5월 |
| | | 빈집 정비사업 시행 및 완료 보고 | 5~12월 |
| 10. 재개발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| | | |
| 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지원 | 도시정비법 개정('21.3월 예정)에 따라 공공직접시행 공모, 심사 및 선정 지원 | | 3~12월 |

참고 1

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

| 구 분 | 건설형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영구임대 | 국민임대 | 행복주택 | 10년임대 | 본납임대 | 장기전세 | 기본주택 ¹⁾ | |
| 근거법률 | 공공주택특별법 | | | | | | |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건의 |
| 지원 기준단가 | 호당 10,532만원 (12.5평×842만원) | 호당 14,752만원 (17.5평×843만원) | 호당 13,145만원 (15.6평×843만원) | 호당(용자) 5,500만원(60㎡이하) 7,500만원 (60~85㎡이하) | 호당(용자) 5,500만원(60㎡이하) 7,500만원 (60~85㎡이하) | 호당(용자) 5,500만원(60㎡이하) 7,500만원 (60~85㎡이하) | 호당(용자) 3억원 이하 (26~85㎡이하) | |
| 지원기준 | 재정 85% 입주자 2.5% 사업자 12.5% | 재정 30% 기금 40% 사업자 10% 입주자 20% | 재정 30% 기금 40% 입주자 20% 사업자 10% | - | - | - | 사업자 10% 기금 80% 입주자 10% | |
| 도비 | - | - | 호당 607만원 | - | - | - | - | |
| 공사 | 재정부담 | 사업자 12.5% | 사업자 10% | 사업자 10% | 사업자 부담 | 사업자 부담 | 사업자 부담 | 사업자 10% |
| | 이자율 | - | 1.8% | 1.8% (지방공사 1.0%) | 2.3%(60㎡이하) 2.8%(60~85㎡이하) | 2.3%(60㎡이하) 2.8%(60~85㎡이하) | 2.3%(60㎡이하) 2.8%(60~85㎡이하) | 1.0% |
| 공급규모 | 40㎡이하 | 60㎡이하 | 60㎡이하 | 85㎡이하 | 85㎡이하 | 85㎡이하 | 85㎡이하 | |
| 임대기간 | 영구/50년 | 30년 | 6년~20년 | 5, 10년 | 5, 10년 | 20년 | 30년 이상 | |
| 입주대상 | 저소득층 | 저소득층 | 신혼부부, 청년, 고령자 | 무주택세대 | 무주택세대 | 무주택세대 | 무주택세대 | |
| 입주자격 | 수급자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 등 월평균소득 50%이하 (3인이하 312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이하 (3인이하 436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 (3인이하 624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 (전용 60㎡이하, 3인이하 624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 (전용 60㎡이하, 3인이하 624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 (3인이하 624만원) | 제한없음 | |
| 임대조건 | 시세 30% | 시세 60~80% | 시세 60~80% | 시세 90% | 시세 90% | 시세 80% | 기준중위소득 20% 이내 | |

| 구 분 | 매입·임차형 | | | 기타 사회주택 (토지임대부 시범사업 기준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매입임대 | 공공리모델링 | 전세임대 | |
| 근거법률 | 공공주택특별법 | | | 민간임대주택특별법,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|
| 지원 기준단가 | 호당 12,800만원 | 호당 9,500만원 | 호당 11,000만원 | 민간사업자부담 (HUG, HF 등 용자 및 보증 활용) |
| 지원기준 | 재정 45% 기금 50% 입주자 5% | 재정 45% 기금 50% 입주자 5% | 기금 95% 입주자 5% | |
| 도비 | 호당 2,000만원 | - | - | - |
| 공사 | 재정부담 | 호당 3,000만원 | - | 토지임대차 |
| | 이자율 | 1.0% | - | [토지(공공)+주택(사회적 경제주체)] |
| 공급규모 | 85㎡이하 | 85㎡이하 | 85㎡이하 | 60㎡미만 |
| 임대기간 | 20년 | 6년 | 20년 | 30년 |
| 입주대상 | 저소득층 | 대학생, 청년 | 저소득층 | 무주택자, 장애인, 아동빈곤가구, 1인 가구 등 |
| 입주자격 | 수급자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%이하 (3인가구 312만원) |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이하 (1인가구 359만원) | 수급자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%이하 (3인가구 312만원) | 일반공급(60%이하) : 소득기준 없음 특별공급(40%이상) : 취약계층 + 정책대상 |
| 임대조건 | 시세 30% | 시세 30~50% | 시세 30% | 시세 80% |

1) (기본주택) 무주택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유형신설 제안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(법적 용어는 아니며 임대료, 임대기간 등은 검토 중)

『경기도 주거복지 조감도』

| 대상/자격 | 사업명 | 주요내용 | 경기도 자체 지원 |
|---|---|--|-----------------|
| 청년 (19세~39세) | ①⑭ (경기)행복주택 ② 사회주택 ③⑥ 임대보증금 (이자)지원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⑮ 매입임대주택 ⑯ 전세임대주택 | ① 경기행복주택 ·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육아형 주택공급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「경기행복주택」 ② 사회주택 ·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· 경기행복주택(1만호) 및 도내 행복주택(5만호)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-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(임주시 기본 40%, 유자녀(1자녀) 60%, 유자녀(2자녀 이상) 100%) ④ 햇살하우징 사업 · (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 개보수사업 ⑤ G하우징 사업 · (중위소득 70% 이하가구) 창호 화상실 도배 등을 부분 개량 보수 등 리모델링 ⑥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· 도내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(가구)에게 표준임대보증금(50%, 최대 250만원) 무이자 용자 지원 ⑦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· 중증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⑧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·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비주택거주민 등 전세금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% 지원(도·HF-은행 협약사업) ⑨ 전세보증금 지원 ·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지원 (전세보증금의 85% 이내, 최대 1억원) | 경기도 자체 지원 |
| 신혼부부 혼인(신고) 후 7년 이내 (예비부부 포함) | ①⑭ (경기)행복주택 ② 사회주택 ③⑥ 임대보증금 (이자)지원 ⑫ 국민임대주택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⑮ 매입임대주택 ⑯ 전세임대주택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| 고령자 만 65세 이상 | ①⑭ (경기)행복주택 ② 사회주택 ③⑥ 임대보증금 (이자)지원 ④⑤ 햇살·G 하우징 ⑥ 임대보증금 지원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⑰ 고령자 복지주택 ⑱ 주거급여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정부 지원 |
| 장애인 | ② 사회주택 ④⑤ 햇살·G 하우징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| 중증장애인 (심한장애인) | ② 사회주택 ④⑤ 햇살·G 하우징 ⑥ 임대보증금 지원 ⑦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⑲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|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· 차상위계층· 한부모가정 | ①⑭ (경기)행복주택 ② 사회주택 ③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④⑤ 햇살·G 하우징 ⑥ 임대보증금 지원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| 비주택 거주민 |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| 긴급 주거지원 대상 | ③⑥ 임대보증금 (이자)지원 ⑧⑨ 저소득층 금융지원 ⑪⑫⑬ 영구/국민/공공임대 ⑮⑯ 전세/매입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| ⑩ 영구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)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⑪ 국민임대주택 ·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4분위이하)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/10년) 임대의무기간(5년, 10년)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⑭ 행복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을 위해 직장,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⑮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· 저소득계층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(시중 시세 30%, 최장 20년 거주) ⑯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·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(수도권 110백만원 한도 지원) ⑰ 고령자 복지주택 ·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독거노인 등 고령자(65세 이상)를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⑱ 주거급여 (중위소득 45% 이하인 저소득층 임차가구) 주거비, (자가가구) 주택수선비 지원 ⑲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 내 이동편의 시설 설치 ⑳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· 고시원, 쪽방, 반지하 등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| |

* 소득수준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가능상품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